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39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남인순 · 서영석 · 이수진

전진숙 · 정태호 · 정춘생

김 윤 · 임오경 · 진선미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6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위탁 아동을 위한 특례) 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 아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 가정에 위탁된 때부터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위탁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아동의 일상거소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위
2. 건강 상태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서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위탁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탁 아동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아동, 위탁 아동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아동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고 하는 경우
2. 「민법」 제9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다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정지된 경우 위탁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위탁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 중인 사람(이하 “위탁 양육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양육자는 제1항에 따른 후

견인과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인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위탁 아동의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위탁 아동을 위하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 아동에게 오로지 이익이 되는 행위

4. 그 밖에 위탁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 이 경우 위탁 양육자는 행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성년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탁 양육자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탁 양육자 및 위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는 후견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6(위탁 아동을 위한 특</u> <u>례) 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u> <u>라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u> <u>“위탁 아동”이라 한다)에 대해</u> <u>서는 해당 아동이 가정에 위탁</u> <u>된 때부터 법원에 의하여 새로</u> <u>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u> <u>까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u> <u>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u> <u>·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된</u> <u>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u> <u>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u>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u> <u>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까지</u> <u>위탁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u> <u>권행사는 정지된다.</u> <u>③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u>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u>구청장이 위탁 아동을 위하여</u> <u>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u> <u>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u>

받아야 한다.

1. 위탁 아동의 일상거소를 해
외로 이동시키는 행위

2. 건강 상태의 유지 또는 개선
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의
료행위로서 의료행위의 직접
적인 결과로 위탁 아동이 사
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친권자의 동
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
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탁 아
동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아동, 위탁
아동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
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
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탁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아동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고 하는 경우

2. 「민법」 제9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다만, 미성년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정지된 경우 위탁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위탁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 중인 사람(이하 “위탁 양육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양육
자는 제1항에 따른 후견인과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인 및 해당 아동
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위탁 아동의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
한 사항

2. 위탁 아동을 위하여 사회에
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 아동에게 오로지 이익
이 되는 행위

4. 그 밖에 위탁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
이 경우 위탁 양육자는 행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성
년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⑧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탁 양육
자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

	<u>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탁 양육자 및 위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u> <u>⑨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는 후견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u>
--	---